##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581 발의연월일: 2024. 12. 17.

발 의 자:김성원·이종배·김선교

서일준 · 김정재 · 임이자

박성훈 • 백종헌 • 정동만

김소희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무원의 경우 「공무원 인재개발법」에 따라 자기개발 학습을 통하여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, 공직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장이 지원할 수 있음.

반면, 군인의 경우 국가자격, 민간자격, 학점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군인도 자격취득 등 지원대상에 자기개발활동을 명시하여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(안 제46조의6).

법률 제 호

##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의6제1항 중 "취득하는데"를 "취득하고 자기개발활동을 하는데"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전문성을 향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기개발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6조의6(군인의 자격취득 등	제46조의6(군인의 자격취득 등		
지원)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이	지원) ①		
국가자격, 민간자격, 학점 등을			
취득하는데 필요한 지원 정책	취득하고 자기개발활동을		
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	하는데		
협의하여 수립・시행하여야 한			
다.	,		
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	2		
다음 각 호와 같다.	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<u> &lt;신 설&gt;</u>	4.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		
	전문성을 향상하는 데 필요하		
	다고 인정되는 자기개발활동		
	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	
	<u>것</u>	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	